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 조사

결 과 보 고 서

평 창 군 의 회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
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서

1. 활동개요

가. 목 적

ㅇ최근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우리군 산림의 황폐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산림분양 국도비지원 사업등의 추진에 있어 미흡하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산림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그 시정을 촉구함으로서 올바른 산림행정의 추진을 유도하기 위함

나 조사기간 : 1999. 11 . 16 ~ 11. 18(3일간)

다. 조사인원 : 4명

라. 구 성

ㅇ위원장 : 신교선 위원

ㅇ간 사 : 김완규 위원

ㅇ위 원 : 강석주위원, 이수현위원

※사무보조 : 전문위원외 2명

마. 조사대상

- '97 ~ '99 국도비 지원사업 및 산림수해복구 현황
- '97 ~ '99 산림병해충 국도비지원사업 현황
- "97 ~ '99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

바. 조사일정

일 정	구 분	활 동 내 용	비 고
'99.11.16 (화)	제1차 조사활동	○질의 · 답변 - '97~ '99 국도비지원사업 및 산림수해복구 현황 - '97 ~ '99산림병해충국도비 지원사업현황	
11.17(수)	제2차 조사활동	○질의 · 답변 -'97~'99 산림병해충국도비 지원사업현황 -'97~'99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 ○현지확인 -평창읍 종부리 초지조성허가 불법산림훼손현장 -미탄면 창리 산 2-1번지 군유림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현장	
11.18(목)	제3차 조사활동	○현지확인 -도암면 유천리 산96-2번지 조림지 현장 -도암면 유천리 산109번지 조림지 현장 -봉평면 무이리 산170번지 산림 형질변경허가 현장 -봉평면 무이리 산175번지 " -봉평면 무이리 임277-4번지 "	

2. 심사결과(특별위원회)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1월 10일 신교선의원 외6인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11월 9일

다. 상 정 일 자

1)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99.11.9)
-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2)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의 및활동

(가) 제1차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 조사특별위원회 (11.9)
- 위원장, 간사선임
- 계획서 채택

(나) 제1차 조사활동(11.16. 제7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질의·답변

(다) 제2차 조사활동
- 질의·답변
- 현지확인

(라) 제3차 조사활동
- 현지확인

(마) 제2차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 조사특별위원회(99.11.19)
-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3.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1) 풀베기사업과 관련

○ **조림·육림및입목벌채요령 제9조에 의거 풀베기 사업에 있어 경제수는 식재 당해년도를 포함 3년간 실행하고 잣나무등 초기성장이 늦은 수종은 5년간 실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풀베기 작업은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진부면 하진부리 산239번지는 묘목(자작나무)생육 5년이상의 대목으로서 풀베기 사업등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하였고

- '99년도 풀베기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규정기간내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집행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 조림사업지 유천리 96-2번지일대 현지확인 결과, 일부 구간은 밀식이 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일부구간은 주간 간격이 현저하게 넓으며 작업조건이 불량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림조차 하지 않은 구간도 확인되었음

o 차후 풀베기 사업지 선정에 있어서는 사업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확한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추진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규정 기간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사업추진 과정 및 완료후에도 정확한 행정지도와 확인을 통하여 사업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조림의 누락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통보하기 바랍니다.

2) 군유림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수려한 산림경관을 보존하며 산림생태계의 균형유지를 목적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요령(훈령 제350호), '97년도 강원도 산림병해충 방제시책에 근거하여 추진한 군유림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사업에 있어**

-'97년 2월 당초조사시 피해도 "심"으로 판정된 46필지 292헥타를 확정하고 6개월뒤인 '97.8월 16필지 133헥타로 조정하는등 피해도에 따라 확정하였다는 군유림 벌채 대상면적이 불과 6개월뒤에 큰 변경이 있었다는 것은 기준등 행정추진의 일관성 결여라고 판단되며,

- 입찰매각에 있어 매각면적 19필지 164헥타에 대한 예정가 134,000천원으로 하여 '98,10.24 입찰한 결과, 예정가 4배에 해당되는 530,160천원에 낙찰되고 이 낙찰가에도 사업을 추진한 시행자가 이익이 있었다는 여론등을 고려할 때 사전대상지에 대한 매목조사가 군민의 재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담당자의 정확한 매목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군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이는 결론적으로 매목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함에 군세수 증대를 위하여 정확한 매목조사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미탄면 창리 산 2-1번지 군유림 피해목 벌채

o 앞서 2)항의 목적과 규정 및 계획에 따라 추진한 미탄면 창리 산 2-1번지 군유림 피해목 대상지 선정 및 매각과 관련하여

- '99.11. 17일 현지확인 결과, 동필지에 솔잎혹파리 피해가 있었다면 접한 필지인 창리 산1번지(국유림), 산2의2(국유림) 산3의1(군유림)에도 최소한의 솔잎혹파리 확산흔적이 확인되어야 하나 전혀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은 피해목 벌채대상지 선정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가령 피해가 있었다해도 이러한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항공시비 또는수간주사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며

- 또한 매각면적인 17헥타에 대한 예정가를 1,912천원으로 하여 '98.10.31일 입찰한 결과 원주시 단계동 "김남교"가 예정가 13배에 해당되는 25,260천원에 낙찰되고 동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재입찰한 결과, 당초 낙찰가에 4분의1 밖에 안되는 낙찰가 6,200천원에 낙찰된 점을 고려할 때 2)항과 같이 매목조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 본 벌채지내에는 40 ~ 50년생되는 수십그루의 잣나무가 있었으나 최근 무단 벌채된 사실이 발견되어 군유림 관리의 헛점이 나타났음.

o 향후 군유림 피해목 벌채대상지 선정과 군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매각시 정확한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매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본 필지에 대한 조림은 군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묘목을 선정하기 바람.
특히 잣나무 벌채에 대하여는 사실경위를 분명히 조사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평창읍 종부리 초지조성허가지 주변 산림불법훼손

o '99. 5.29일 평창읍 종부리 산 23-1번지외 4필지 7,53헥타 초지조성허가에 따른 동리 9-3번지외 4필지 군유림 1.32헥타,13번지외 4필지 사유림 1.09헥타등 총 2.41헥타 불법산림훼손과 관련

- 본 지역일대는 농촌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도·농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군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이용한 종합적인 관광레저 휴양지개발과 농촌 소득 기반조성을 위하여 어렵게 '98.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43호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일대로서 개발과 민자유치등 앞으로 개발에 대비한 신중한 허가가 검토 되어야 했음에도 이 일대를 초지조성으로 허가해 준 것은 허가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 또한 '99. 9.2 초지조성 수허가자에 의한 착수신고에 의하여 '99. 9.8 임업경영과, 축산경영과 합동출장시 허가청과 사전 협의없이 소나무 굴취사실이 발견되어 사전 불법확산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를 통한 적절한 행정조치 없이 한달이상이나 무단 방치하다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의회에서 본격적인 자료조사가 있자 뒤늦게 경계측량과 조치계획을 수립한 점과 본행위가 군청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불법이 자행된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부서간 매끄럽진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군유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결과는 평창군 행정의 큰 헛점이 발견되었다고 판단됨.

o 군유지, 산림부서, 초지조성허가, 개촉지구관리 부서는 업무처리에 대하여 다시한번 반성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불법행위지에 대하여는 적법절차에 조치하기 바라며, 공무원의 직무태만 부분에 대한 별도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산림형질변경허가

○ 임업경영 및 산지개발을 통한 군발전에는 반대이유가 없으며 불가피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 97. 5. 1일 주택, 여관건축목적으로 평창군수로 부터 허가된 봉평면 무이리 산 170번지 9,772㎡(피허가자 서울시 천곡동 이상만)허가지는 공사중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농어촌 도로등 교통에 장애가 되어 주민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었고 산림형질변경 기간이 '97.5.31일 만료되어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함이 타당하였으나 현재까지 산림형질변경 및 건축등의 허가가 재연장되어 자연경관 저해와 우기시 토사로 인하여 공익을 저해하고 있고

- 인근 필지로서 '97년. 8월 12일 여관등으로 허가된 봉평면 무이리 산 175번지 17,552㎡도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취소와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취함이 타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계속 연장해주고 있고 법면 처리에 있어 피해방지계획에 적합하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주변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 또한 1995. 12. 12일 근린주택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되어 동년 12.30일 건축허가 처리된 봉평면 무이리 산 277-4번지 3,651㎡는 관광휴양시설인 (주)보광의 정면에 위치한 곳으로서 '97.9.6일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목적

사업에 대한 의사가 없음에도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현재까지 3회에 결쳐 연장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음.

이와 같이 우리군 산림개발의 실태를 살펴보더라도
준보전 임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여 놓고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대다수 있고
산림형질변경후 무단으로 방치하여 토사유출, 자연경관
저해, 재해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그 목적에 있어서도 농업용 목적등은 대부분 사업이 완료
되었으나 개발능력이 없는 투기성 목적의 숙박업등이
대부분 방치되고 있고, 사업허가를 득하여 사업능력과
의사가 없어 기존 허가지에도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등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함에도 동일인에게 또
다른 부지에 재허가를 해주는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현지확인한 봉평면 무이 · 면온지역 일대는 관광 및
휴양 목적으로 정부차원의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우리군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야 하나 관리도 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개발허가와 연장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이유로
계속적인 연장허가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
개발저해는 물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음.

또한 개발의 규모가 큰 건축허가와 산림형질변경에
있어서는 복합민원으로 의제처리되어 관리부서를 단일화
하는 것이 관리면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나 대부분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단독처리로 인하여 부서간 책임회피

식의 잘못된 업무추진이 나타나고 있음

o 향후 산림형질변경등 무분별한 개발을 예상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책과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과적인 업무추진의 확실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산림형질변경허가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한 사항외에도 허가후 사업을 미착공한 부분에 대한 사업별 처리계획과 건축허가가 취소된 4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림형질변경 허가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허가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리계획을 함께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산림행정 기타분야

○ 평창군 행정에 대한 주민평가는 대부분 시대적흐름과 지방자치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개혁과 공무원 의식에 큰 변화가 있으나 유독 산림행정 만이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고 권위주의적 형태를 벗어 버리지 못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임.

- 산림병해충등 막대한 산림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에 있어 산주직영이 72.6%를 차지하고 임협위탁이 27.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산주직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사업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철저한 지도·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보완을 통하여 엄정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나타났음.

- 우리군이 강원도 군중에서 산림단일 부서로 존치하고 있는 점은 집행권자의 산림행정에 대한 추진의지가 확고함을 볼 수 있으며 평창군민 모두가 집행권자의 의지에 동감하고 산림에 대하여 거는 기대가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부서의 책임자는 세부적인 업무에 대하여 모르고 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군 신림행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실은 집행권자의 집행의지가 반영되고 있는지 의심이 가며

평창군의회가 금번 조사를 실시함은 진실을 밝혀 잘못된 점을 파헤쳐 문제삼기 보다는 보다는 오래전부터 산림행정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주민들의 산림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기 때문에 올바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하여 얼마남지 않은 정기회를 앞두고 추진하였음에도 현지확인시 사업장을 찾지 못하는등 이러한 행위는 평창군 산림행정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음.

o 향후 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이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방법과 선정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특히 업무연찬과 시책발굴에 중점을 두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특위 서류 확인("99. 11. 16~11. 17 (2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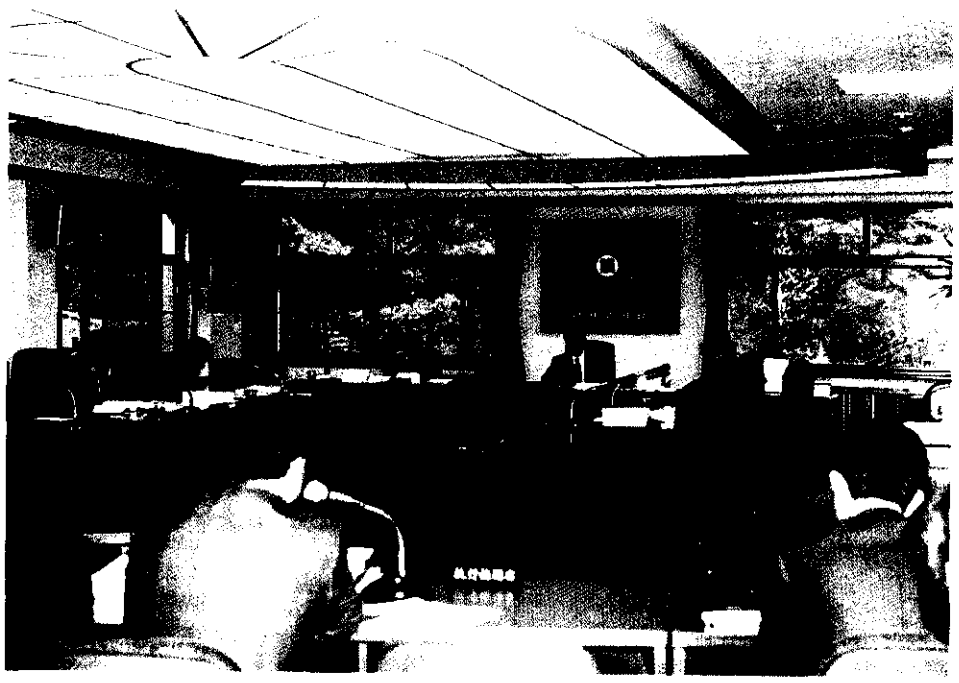

○ 평창읍 종부리 초지조성허가 관련 불법현황 확인('99. 11. 17)

〈〈 불법현장 〉〉

〈〈 임목이동을 위해 작업현장 〉〉

○ 미탄면 창리 산2-1번지 군유림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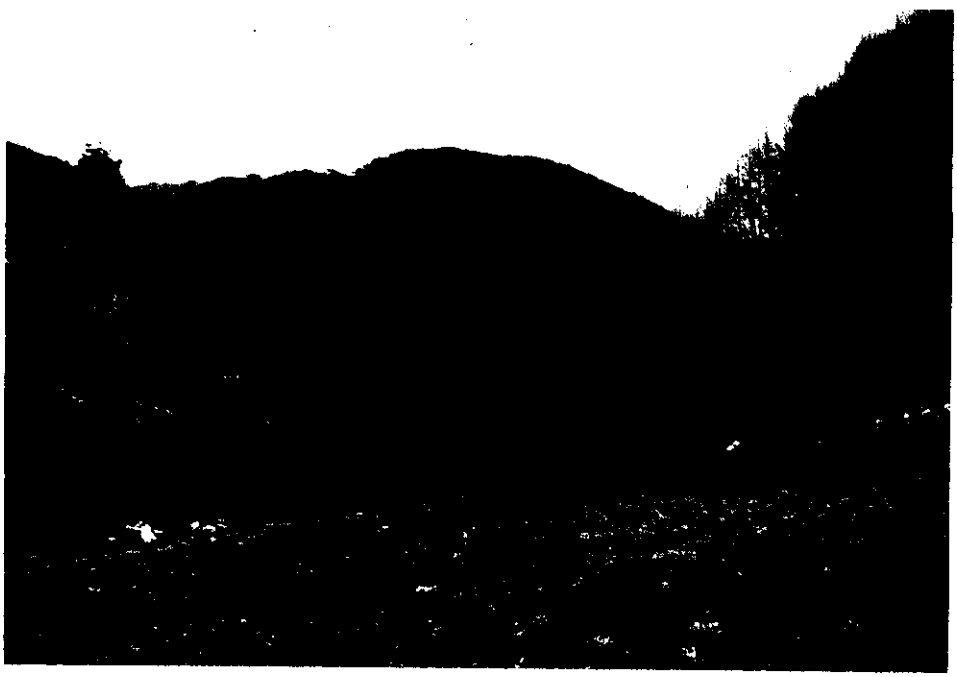

○ 도암면 유천리 산96-2번지 조림현장

○ 봉평면 면온·무이 무분별한 산림형질 변경지 확인

〈〈 봉평면 무이리 산 175번지 일대 〉〉

○ 봉평면 면온•무이 무분별한 산림형질 변경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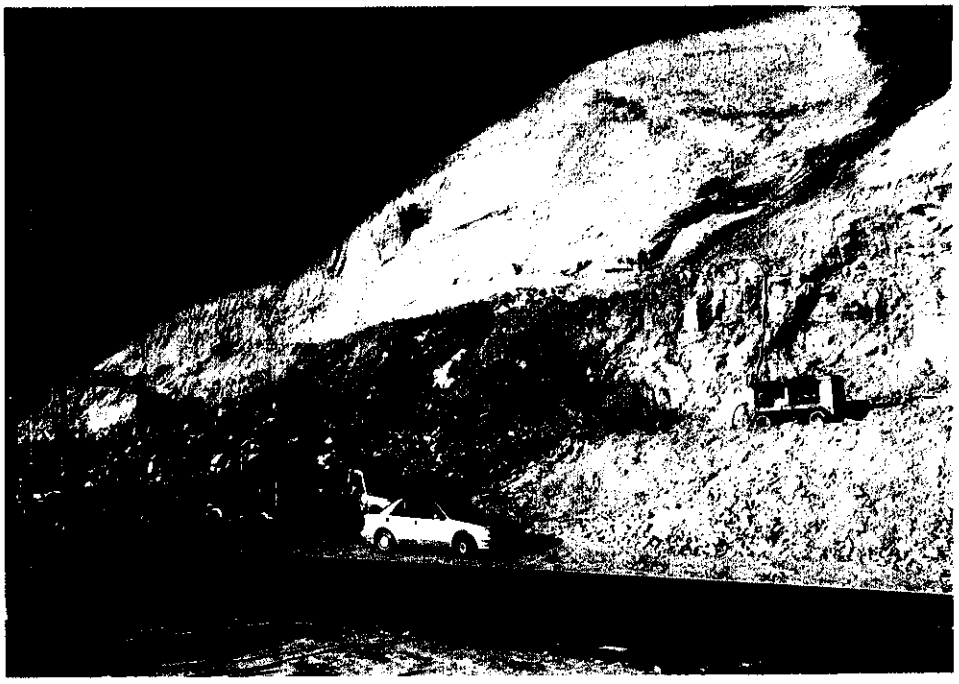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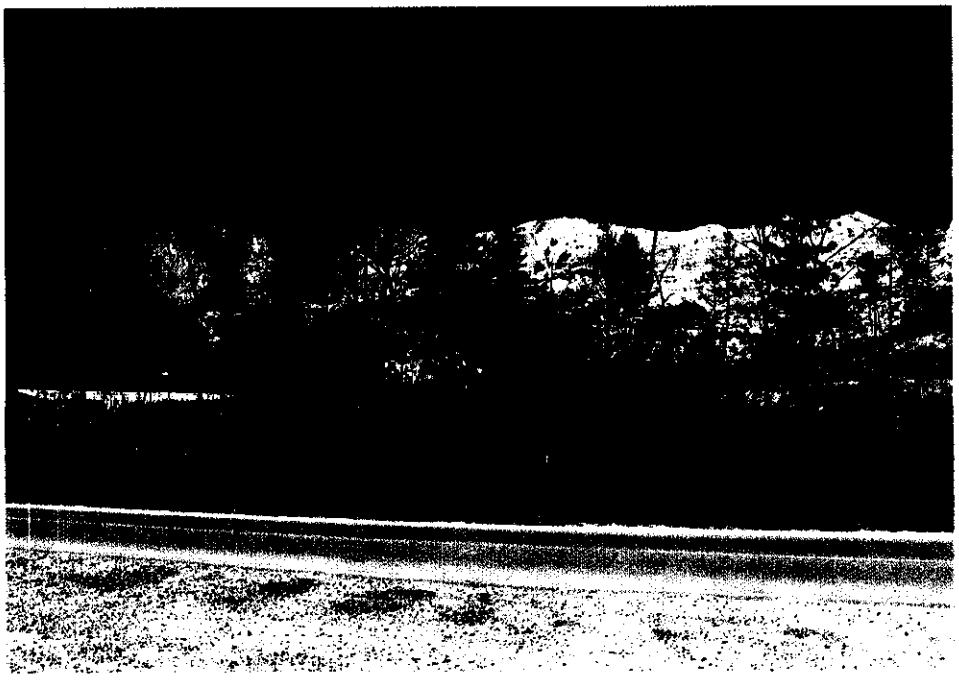

〈〈 봉평면 무이리 임 277-4번지 〉〉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결과

시정개선사항처리계획(결과)

평 창 군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
조사결과 시정개선사항 처리계획(결과)

1) 풀베기사업

□ 시정개선사항

○ 조림·육림 및 입목벌채요령 제9조에 의거 풀베기 사업에 있어 경제수는 식재 당해연도를 포함 3년간 실행하고 잣나무등 초기 성장이 늦은 수종은 5년간 실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풀베기 작업은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진부면 하진부리 산239번지는 묘목(자작나무)생육5년이상의 대목으로서 풀베기 사업등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하였고

- '99년도 풀베기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규정기간내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집행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 조림사업지 유천리 96-2번지일대 현지확인 결과, 일부 구간은 밀식이 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일부구간은 주간 간격이 현저하게 넓으며 작업조건이 불량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림조차 하지 않은 구간도 확인되었음

○ 차후 풀베기 사업지 선정에 있어서는 사업투자 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정확한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추진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규정 기간내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사업추진 과정 및 완료후에도 정확한 행정지도와 확인을 통하여 사업에 적정성을 기하기 바람.

□ 처리계획(결과)

○ 사업 계획전 담당직원이 매필지 현지확인하여 수종,면적 등을 확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사업기간(7월 ~ 8월)내 완료될수있도록 지도 확인 강화하고 내년도 사업량이 5,320ha(1,596만평)로 대상 면적이 넓으므로 각 읍면별로 지도인부 사역하여 현지 지도 및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암면 유천리 산96-2번지외 2필(5.8ha-낙엽송 11,600본 식재)의 조림지에는 산주 장옥화(대행실행자-진부면거주 최대복)에게 보완 지시하여 2,000년에 보식 조치하겠습니다.

2) 군유림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 시정개선사항

○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수려한 산림경관을 보존하며 산림생태계의 균형유지를 목적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요령(훈령제350호), '97년도 강원도 산림병해충 방제시책에 근거하여 추진한 군유림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사업이 있어

- '97년 2월 당초조사시 피해도"심"으로 판정된 46필지 292헥타를 확정하고 6개월뒤인 '97. 8월 16필지 133헥타로 조정하는등 피해도에 따라 확정되었다는 군유림 벌채 대상면적이 불과 6개월뒤에 큰 변경이 있었다는 것은 기준등 행정 추진의 일관성 결여라고 판단되며,

- 입찰매각에 있어 매각 면적 19필지 164헥타에 대한 예정가 134,000천원으로 하여 '98.10.24 입찰한 결과, 예정가 4배에 해당되는 530,160천원에 낙찰되고 이 낙찰가에도 사업을 추진한 시행자가 이익이 있었다는 여론등을 고려할 때 사전대상지에 대한 매목조사가 군민의 재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담당자의 정확한 매목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군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이는 결론적으로 매목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함에 군세수 증대를 위하여 정확한 매목조사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임.

□ 처리계획(결과)

○ '98 군유림솔잎혹파리 피해방제 벌채 매목조사는 산림청 훈령 예규집 영림계획운영요령에 의거 매목조사를 표준지 조사 하였으나 향후 매각시는 최대한 인원을 동원하여 입목에 대한 개개 매목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미탄면 창리 산2-1번지 군유림 피해목 벌채

□ 시정개선사항

○ 앞서 2)항의 목적과 규정 및 계획에 따라 추진한 미탄면 창리 산 2-1번지 군유림 피해목 대상지 선정 및 매각과 관련하여

- '99. 11. 17일 현지확인 결과, 동필지에 솔잎혹파리 피해가 있었다면 접한 필지인 창리 산1번지(국유림),산2의2(국유림)산3의1(군유림)에도 최소한의 솔잎혹파리 확산흔적이 확인되어야 하나 전혀 흔적을 발견할수 없었다고 판단되고, 가령 피해가 있었다해도 이러한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항공시비또는 수간주사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며

- 또한 매각면적인 17헥타에 대한 예정가를 1,912천원으로하여 '98. 10.31 일 입찰한 결과 원주시 단계동 "김남교"가 예정가 13배에 해당되는 25,260천원에 낙찰되고 동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재입찰한 결과 당초 낙찰가에 4분의1밖에 안되는 낙찰가 6,200천원에 낙찰됨 점을 고려할 때 2)항과 같이 매목조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 본 벌채지내에는 40~50 년생되는 수십그루의 잣나무가 있었으나 최근 무단 벌채된 사실이 발견되어 군유림 관리의 헛점이 나타났음.

○ 향후 군유림 피해목 벌채대상지 선정과 군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매각시 정확한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매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본 필지에 대한 조림은 군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묘목을 선정하기 바람.
특히 잣나무 벌채에 대하여는 사실경위를 분명히 조사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계획(결과)

○ 미탄면 창리 산2-1번지 군유림솔잎혹파리 피해방제 벌채지의

- 잣나무 벌채는

· '98. 12. 24일 대전시 서구 내동 38-3번지 이상봉이 입목을 매수하여 벌채 및 지존작업을 완료하였으나 벌채 허가구역내 일부 지존작업이 미흡한 지역이 있어 '99. 10월말경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보존목이 아닌 잣나무 2본을 벌도하였으며

· 벌도된 잣나무 2본은 원목으로 사용하고자 벌도한 것이 아니 폭목으로 용재 가치가 없는 입목으로 판단하여 지존작업 차원에서 벌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향후 조림 및 매목조사 추진은

· 벌채지에 대한 조림은 군민소득과 직결될수 있는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조림하고 매목조사는 정확을 기하고자 개개매목 조사 방법을 이행하겠음.

※ 『산림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5호규정 』

일반 산주는 년 5㎥이내 임의벌채 할수 있으며,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년 50㎥이하 임의로 벌채할수 있음.

『산림법 훈령 예규집, 영림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

임상 구분 기준(단순림)

· 침엽수림- 침엽수75%이상 점유하고 있는 임분.

· 활엽수림- 활엽수75%이상 점유하고 있는 임분.

4) 평창읍 종부리 초지조성허가지 주변 산림불법훼손

□ 시정개선사항

○ '99. 5.29일 평창읍 종부리 산 23-1번지외4필지 7.53헥타 초지조성 허가에 따른 동리 9-3번지외 4필지 군유림 1.32헥타,13번지외 4필지 사유림 1.09헥타등 총 2.41헥타 불법산림훼손과 관련

- 본 지역일대는 농촌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도·농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군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이용한 종합적인 관광레저 휴양지개발과 농촌소득 기반조성을 위하여 어렵게 '98.12.30 건설교통부 고시 제43호로 개발초진지구로 지정된 일대로서 개발과 민자유치등 앞으로 개발에 대비한 신중한 허가가 검토되어야 했음에도 이 일대를 초지조성으로 허가해 준 것은 허가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 또한 '99. 9.2 초지조성 수허가자에 의한 착수신고에 의하여 '99. 9.8 임업경영과, 축산경영과 합동 출장시 허가청과 사전 협의없이 소나무 굴취 사실이 발견되어 사전 불법 확산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를 통한 적절한 행정조치없이 한달 이상이나 무단 방치하다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의회에서 본격적인 자료조사가 있자 뒤늦게 경계측량과 조치계획을 수립한 점과 본행위가 군청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불법이 자행된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부서간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한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군유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결과는 평창군 행정의 큰 헛점이 발견되었다고 판단됨.

○ 군유지,산림부서,초지조성허가,개촉지구관리 부서는 업무처리에 대하여 다시한번 반성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적법절차에 조치하기바라며, 공무원의 직무태만 부분에 대한 별도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처리계획(결과)

○ 평창읍 종부리 산 23-1번지외 4필지 7.53헥타 초지조성허가에 따른 동리 9-3번지외 4필지 군유지1.32 헥타,13번지외 4필지 사유림 1.09 헥타 불법산림훼손과 관련

- 피의자 조성호,이병규 진술서에 의거 '99.11.20일 1차 영월 검찰청에 검사 지휘 품신한바 현장소장 박대근 및 작업자 김길훈의 작업 경위등 별도 조사 지휘를 득하였으며
- 피의자 조성호 현장 측량 관련자, 작업반장, 작업인부등 재조사와 상호 대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반출된 조경수 파악을 위하여 강릉으로 공무원 출장 조사하여 반출 조경수 수량을 조사 실시하였으며,
- 본건 조사 확증에 필요한 조경업자 이병규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출두 요구서를 발부하였으며
- 당시 조경수 굴취 작업반장 박대근은 주소 불명으로 계속 조사중이며, 이병규에 대하여는 강제구인등 강력히 대처 수사하여 종결코자 노력 하겠습니다.
- 향후 산림사범 조기 색출 및 수사 조기 착수등에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산림보호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업무추진과정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 행정조치 토록 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5) 산림형질변경허가

□ 시정개선사항

○ 임업경영 및 산지개발을 통한 군 발전에는 반대이유가 없으며 불가피성은 이해할수 있으나

- '97.5.1일 주택, 여관건축목적으로 평창군수로부터 허가된 봉평면 무이리 산170번지 9,772㎡(피허가자 서울시 천곡동 이상만)허가지는 공사중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농어촌 도로등 교통에 장애가 되어 주민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었고 산림형질기간이 '97.5.31일 만료되어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함이 타당하였으나 현재까지 산림형질변경 및 건축등의 허가가 재연장되어 자연경관 저해와 우기시 토사로 인하여 공익을 저해하고 있고

- 인근 필지로서 '97년 8월12일 여관등으로 허가된 봉평면 무이리 산 175번지 17,552㎡도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취함이 타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계속 연장해주고 있고 법면 처리에 있어 피해방지계획에 적합하지 않토록 공사를 추진하여 주변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 또한 '95. 12.12일 근린주택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되어 동년 12. 30일 건축허가 처리된 봉평면 무이리 산277-4번지 3,651㎡는 관광휴양시설인(주)보광의 정면에 위치한 곳으로서 '97. 9.6일 건축허가가 취소되어목적사업에 대한 의사가 없음에도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연장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음.

○ 이와같이 우리군 산림개발의 실태를 살펴보더라도 준보전 임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여 놓고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대다수 있고 산림형질변경후 무단으로 방치하여 토사유출, 자연경관저해, 재해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 그 목적에 있어서도 농업용 목적등은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개발능력이 없는 투기성 목적의 숙박업등이 대부분 방치되고 있고, 사업허가를 득하여 사업능력과 의사가 없어 기존허가지에도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함에도 동일인에게 또 다른 부지에 재허가를 해주는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

○ 또한 현지확인한 봉평면 무이·면온지역 일대는 관광 및 휴양 목적으로 정부차원의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우리군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야 하나 관리도 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개발허가와 연장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을 이유로 계속적인 연장허가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 개발저해는 물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음.

○ 또한 개발의 규모가 큰 건축허가와 산림형질변경에 있어서는 복합민원으로 의제처리되어 관리부서를 단일화하는 것이 관리면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나 대부분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단독처리로 인하여 부서간 책임회피식 잘못된 업무추진이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산림형질변경등 무분별한 개발을 예상되는 인허가 사항에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책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과적인 업무추진의 확실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것이며, 산림형질변경허가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한 사항외에도 허가후 사업을 미착공한 부분에 대한 사업별 처리계획과 건축허가가 취소된 4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림형질변경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허가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리계획을 함께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계획(결과)

○ 봉평면 무이리 산170번지는 일대에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농어촌 도로등 교통에 장애가 있으나 그후에 농경지 연접 수로를 콘크리트 U형 수로를 설치하고 대형 콘크리트 흄관을 매설하여 토사유출 방지책을 마련하였으며, 경관 및 사태 방지를 위한 하단부 산돌쌓기 실행하였음.

인근 필지 산175번지에 대하여는 법면의 경사각을 최대한 유지하여 복구토록 조치하겠음.

(주) 보광 정면에 위치한 무이리 산277-4번지 허가가 만료되는 '99.12.31이후에 즉시 복구계획서를 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적지 복구되어 관광 휴양시설에 걸맞는 괘적한 환경이 될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속적인 연장허가가 되풀이 되는것에 한하여는 허가를 받은후 지속적 사업 실행 의사 및 성과가 없을시 세부 조사하여 허가 취소나 대집행 복구토록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단독 처리로 인한 문제점은 허가나 협의에 해당되는 주관 부서와 면밀히 협조하여 훼손지 방치로 인한 주민피해나 경관에 위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치 않토록 하겠습니다.

허가후 미착공된 부분과 건축허가 취소된4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일제 조사하여 허가 취소 및 복구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 산림행정 기타분야

□ 시정개선사항

○ 평창군 행정에 대한 주민평가는 대부분 시대적흐름과 지방자치 주민 욕구에 부응할수 있는 개혁과 공무원 의식에 큰변화가 있으나 유독 산림행정만이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고 권위주의적 형태를 벗어 버리지 못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임.

- 산림병해충등 막대한 산림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 시행자에 있어 산주직영이 72.6%를 차지하고 임협위탁이 27.3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사업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철저한 지도·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보완을 통하여 엄정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나타났음.
- 우리군이 강원도 군중에서 산림 단일 부서로 존치하고 있는 점에서 집행권자의 산림행정에 대한 추진의지가 확고함을 볼수 있으며 평창군민 모두가 집행권자의 의지에 동감하고 산림에 대하여 거는 기대가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음.
  그러나 부서의 책임자는 세부적인 업무에 대하여 모르고 있음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으나 우리군 산림행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는 사실은 집행권자의 집행의지가 반영되고 있는지 의심이 가며 평창군 의회가 금번 조사를 실시함은 진실을 밝혀 잘못된 점을 파헤쳐 문제삼기 보다는 오래전부터 산림행정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주민들의 산림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기 때문에 올바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하여 얼마남지않은 정기회를 앞두고 추진하였음에도 현지확인시 사업장을 찾지 못하는등 이러한 행위는 평창군 산림행정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음.

○ 향후 산림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이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 방법과 선정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특히 업무연찬과 시책발굴에 중점을 두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계획(결과)

○ 산림분야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육림사업에 있어 산주가 72.6%, 임협위탁이 27.35%를 점하는 것은 산림사업이 대부분 신규 사업이 아닌 벌채에 수반되는 사업으로 입목을 매매 벌채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산주에게 벌채, 조림, 육림을 위임받아 실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 또한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사한이 아니므로 행정기관이 관여하여 임협 위탁을 증가시킬 수 없는 입장이며,
  또한 임협이 물량 확보를 위해서 직접 산주로부터 대행 물량을 다각도로 노력한 의지가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보며

○ 현지확인시 사업장을 찾지 못한 건에 대하여는
저희 임업경영과는 방대한 사업량에 비해 직원 수가 부족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현지 및 민원 처리의 신속을 기하고자 읍면별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지조사 당일 지역 담당 직원이 출장중에 있어 다른 직원이 안내하여 동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림행정에 관련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한편 주민과 함께하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전 직원에 업무연찬을 통하여 능력을 향상 시키고 업무 미숙으로 산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조속히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9 주 요 업 무 추 진 현 황

평 창 군
(임 업 경 영 과)

'99 주요업무 추진현황

【一般施策事業】

▣ 조 림 사 업

○ 사 업 량 : 365필 1,061ha 2,758천본
- 경제수 1,055ha 대묘 5ha 지역녹화 1ha

○ 사 업 비 : 1,760백만원(연 47,560명 인력고용)

○ 사업기간 : '99. 3. 1 ~ 4. 30

▣ 산림병해충 방제

○ 위 치 : 우리군 일원

○ 사 업 량 : 5,060ha
- 수간주사3,300 항공엽면시비1,000 피해목 벌채80 지상시비680

○ 사 업 비 : 1,319백만원(연 38,360명 인력고용)

○ 사업기간 : '99. 3. 1 ~ 12. 30

○ 추진실적 : 수간주사 및 항공엽면시비 완료 : 4,000ha
-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계획 및 시행 : 80ha
- 지상시비 680ha 추진중

▣ 육 림 사 업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개분야 4,990ha

○ 사 업 비 : 1,691백만원(연 37,490명인력고용)

○ 사업기간 : '99. 3. 1 ~ 11. 30

▢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소요인력	진 도(%)
계	4,990ha	1,691백만원	37,490명	100
풀 베 기	4,500	1,455	31,500	100
어린나무가꾸기	160	106	2,960	100
덩 굴 제 거	200	43	820	100
천연림 보육 및 간벌	130	87	2,210	100

▣ 임도 집중보수사업

○ 위 치 :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외 4개소

○ 사 업 량 : 20km

○ 사 업 비 : 64,156천원

○ 사업기간 : '99 6. 4 ~ 10. 1

○ 사업내용 : 로면 및 배수로 정비

○ 사업효과 : 산림재해예방 및 임도기능 유지

▣ 임 도 사 업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 사 업 량 : 3.3km, 226백만원

○ 사업기간 : '99. 4. 21 ~ 9. 17

▣ 군유림 풀베기사업

○ 위　　치 :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산1-3번지외 22필

○ 사업량 : 131ha

○ 사업비 : 41,529천원

○ 사업기간 : '99. 6. 21 ~ 8. 30

▣ 군유림 육림사업

○ 위　　치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550번지외 91필

○ 사 업 량 : 190ha(치수가꾸기, 천보, 보조간벌)

○ 사 업 비 : 113,400천원

○ 사업기간 : '99. 4. 21 ~ 10. 30

▣ 입목벌채허가

○ 건　　수 : 74건

○ 면　　적 : 148ha

▣ 산 불 방 지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9개소 (본청1, 읍면8)

○ 산불조심기간 - 춘기 : '99. 2. 15 ~ 5. 15(3개월)

- 추기 : '99. 11. 15 ~ 12. 15(1개월)

○ 산불감시원 배치 : 83인

- 유급감시원 50인, 초소감시원22인, 공익근무 11인

○ 산불방지 협조 서한문 발송 : 산림작업자 240명등

○ 추진실적

- 산불 조심깃 발 게첨 : 9,128매
- 읍면 순찰차량 순찰강화 : 9대
- 논밭두렁 소각금지 깃발 :4,800매

【特殊施策事業】

▣ 산촌종합개발사업

○ 위　　치 :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5리

○ 사 업 량 : 구역면적 2,029ha

○ 사 업 비 : 1,461백만원(보조 1,061,　융자 400)

○ 주요사업 : 3개분야

- 생활환경개선사업, 생산소득기반사업, 소득원개발사업등

○ 사업효과 :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 향후계획 : 타부처 연관 사업 지원 계획 수립 : 8개실과소(32억)

▣ 우드-칩 생산 시범사업

○ 위　　치 : 평창읍 상리 남산(군유림)

○ 사 업 량 : 시범사업 10ha　우드-칩 6,000포　공공근로 1,000명

○ 사 업 비 : 54,000천원(공공근로사업비)

○ 사업기간 : '99.　10.　12　~　12.　30

○ 추진실적 : 재적 - 52㎥, 인원 - 318명 고용효과가 있음

○ 향후계획 : 양묘장 피복 및 농가공급(포당/1,500원선)

▣ 군유림 특용수 단지 조성

○ 위　　치 : 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2-1번지외 5필
○ 사 업 량 : 마가목외 5종, 44ha, 133천본.
○ 사 업 비 : 31,628천원
○ 사업기간 : '99. 3. 1 ~ 4. 30
○ 사업효과 : 특용수 단지화로 주민소득기반조성

▣ 군유림 종합 경영사업

○ 사 업 량 : 1,265필　12,211ha
○ 사업내용 : 필지별 실태조사, 종합경영계획 수립운영, 전산화추진등
○ 사업기간 : '99 ~ 2000년(2년차 추진)
○ 실태조사 : 1,265필중 879필지 완료(69%)
○ 향후계획 : 전 군유림 주민소득 자원화 추진

▣ 지역녹화사업 추진

○ 위　　치 :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주변(남산)
○ 사 업 비 : 14,880천원
○ 사업내용 : 왕벚나무 식재, 천보, 간벌 등산로 정비등
○ 사 업 비 : 14880천원
○ 사업기간 : '99. 4. 26 ~ '99. 12. 31

▣ 도로변 가로수 식재사업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하리(우회도로)외 4개소

○ 사 업 량 : 1,060본

○ 수　　종 : 마가목265　산벚나무640　은행나무155

○ 사 업 비 : 84백만원

○ 사업기간 : '99. 3. 1 ~ '99. 5. 25

▣ 산림내 특화사업(산림농업) 단지 조성

○ 대 상 지 : 별도 선정

○ 사업규모

(단위 : ha)

사업별 / 재배면적		산양산삼	산약초	산더덕	산채단지	음나무(개두릅)	허 브 나무재배
사업량	40ha	10ha	5ha	5ha	5ha	10ha	5ha
구성비	100%	25%	12.5%	12.5%	12.5%	25%	12.5%

○ 사 업 비 : 1,360백만원

○ 향후계획 : 2000년도 특수시책 사업 책정 건의

▣ 호우피해 산림복구사업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상리 산39번지외 101개소

○ 사 업 량 : 산사태102개소 11.04ha, 임도440m

○ 사 업 비 : 563백만원

○ 사업기간 : '99. 1. 11 ~ '99. 12. 19

▣ 한강수계 보안림지정

○ 대상면적 : 8,849ha(군유림 8,760ha, 도유림 89ha)

○ 사업기간 : '99. 1. 20 ~ 7. 30

○ 현지조사결과

- 면 적 : 8,849ha(지정 : 2,236ha, 제외 : 6,613ha) 조사 확정
- 제외내용 : 사방지, 대부림, 1ha이하 산림등

▣ 금당 자연휴양림 조성

○ 위 치 :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44번지외 2필

○ 사업구역 : 군유림, 129ha

○ 사업기간 : 연차적으로 추진

○ 추진실적 : 자연휴양림 구역 지정 : '98. 7. 7(산림청98-1호)

○ 향후계획 : 2000년 국비지원 신청(설계비) 주변 사유지(3,000평) 매입 후 적극추진

▣ 임내더덕 시범단지 조성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산38번지(군유림)

○ 사 업 량 : 더덕씨 파종 10ha

○ 사 업 비 : 2,000천원

○ 사업기간 : '99 ~ (분수계약 체결)

○ 추진실적 : 대상지 확정 및 파종 완료

▣ 산림농업촉진대회 개최

○ 행사목적 : 전국 최초로 산림농업 촉진대회를 개최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신 산지소득 기반조성 계기 제공

○ 일　　시 : '99. 10. 6 ~ 10. 8(03일간)

○ 위　　치 :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

○ 행사내용 : 산림농업 학술강연, 산림자원 전시회

○ 참 석 자 : 450명(임업인, 임업관련공무원등)

○ 주요전시 : 산삼, 야생화, 분재, 목공예, 산림재해 사진, 통나무집, 산림장비, 산채, 특용수, 부엽토등

▣ 양 묘 사 업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외 1개소

○ 사 업 량 : 2개소　3,000평　263,500본

- 산초 파종, 고로쇠나무외 9종 이식

○ 사 업 비 : 48백만원

○ 사업기간 : '99 ~ 2001(2연차 추진)

○ 향후계획 : 군직영 양묘장 조성 : 15,000평

- 대화면 상안미리 하천변

※ 군목단지 조성을 위한 전나무 양묘 : 14,000본(수고40cm)

▣ "솔내음 평창" 상징 소나무 이식

○ 위　　치 : 평창군청 정문 좌우측
○ 사 업 량 : 2본 (수령 : 60년생)
○ 사 업 비 : 2,000천원
○ 사업기간 : '99　6.　12
○ 사업효과 : 농산물 상표 상징**(솔내음 평창)** 및 청정 평창 홍보

▣ 대규모 군유림 일제점검

○ 위　　치 : 우리군 일원
○ 사 업 량 : 12필　　56ha
○ 사업내용 : 대규모 사용허가지에 대한 이용현황 점검
○ 사업기간 : '99. 5　6 ~ '99. 5. 7
○ 사업효과 : 타용도로 전환 사용 행위 단속(양묘장전환 1필 1,000평

▣ 송이환경 개선사업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상리 산48-1(군유림)
○ 사 업 량 : 10ha
○ 사업기간 : '99　7.　15　~　10.　31
○ 사업내용 : 피압목 제거 및 비음도 유지로 송이 포자 증식
○ 사업효과 : '99년 일부지역 송이 생산

▣ 토종수 보급 운동 전개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양묘장)

○ 사 업 량 : 45,000본

- 개살구10,000본 복숭아5,000본 음나무10,000본 산초나무20,000본등

○ 사업내용 : 농가에 유·무상 공급(2000년 양묘추진)

○ 사업효과 : 쾌적한 가로 및 주거환경 조성, 농산촌 정취고양

▣ 산림문화유산 발굴

○ 위　　치 : 우리군 일원

○ 발굴개소 : 61개소(산, 재, 령, 고개, 보호수, 기타등)

○ 사업기간 : '99 7. 30 ~ 12. 25

○ 사업내용 : 점차 사라져가는 전설 및 유래등을 보존 전수

○ 사업효과 : 전통 산림문화를 발굴하여 전래 계승

▣ 신지식 임업인 선정 지정

○ 인적사항 : 성　명 : 현 수 욱

주　소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 지정현황 : 산림청지정(99 - 7호)

○ 지정사유 : 야생화, 산채, 산약초 개발에 기여

○ 사업효과 : 관내 주민에게 산림농업 견학지로 이용

▣ 삼림욕장 조성(건의중)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상리 산48-1(군유림)

○ 사 업 량 : 10ha

○ 사 업 비 : 4억원(국비2　도비1　군비1)

○ 사업기간 :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 사업내용 : 편익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기타시설등

○ 사업효과 : 다각적인 산림경영 및 주민에게 삶의 질 향상

▣ 야생화 꽃길조성

○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외 3개소

○ 사 업 량 : 3,330㎡　벌개미취외 13종　42천본 식재

○ 사 업 비 : 42,000천원(공공근로사업비)

○ 사업기간 : '99 5. 11 ~ 7. 10

○ 사업효과 : 야생화 식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산림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위　　치 : 평창군 일원

○ 사 업 량 : 각종 산림사업 입력(20개분야)

○ 사업대상 : '82부터 ~ '99까지

○ 사업기간 : '99 3. 15 ~ 9. 30

○ 사업효과 :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임업진흥정책수립에 기여

조 림 사 업

○ 관련근거법령
- 산림법 제41조 1항
- 산림법 시행규칙 제34조 1항
- 조림·육림 및 임목벌채요령(예규 제1467호)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목표
- 장기적인 산림자원조성과 쾌적한 국토경관보전 및 목재자급 기반확대와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

○ 방침
- 경제수조림 : 묘목구입(강원도에서 구입 수급계획에 의함)
  실행은 산주직접 실행을 원칙으로 하나 임협위탁가능(군유림조림은 별도 임협과 계약하여 실행)
- 대묘조림 : 묘목구입(도수급계획에 따른 현물보조)
  실행은 별도 설계서에 의거 임협에 위탁계약

○ 추진개요

1. 예정지 확정

ㅇ 경제수조림
-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지(전년도 미조림지 및 금년 벌채지)
- 산불피해 임지등 미입목 임지
- 임업진흥촉진지역 및 국도변 가시지역 우선

ㅇ 대묘조림
- 국도변 연접임지의 경관조성 대상지
- 피해목제거 벌채임지

2. 묘목수급

- 묘목구입 및 수급은 강원도 수급계획에 의한 현물보조
- 지정된 묘목장에서 검수하여 수송, 배부(경제수 및 대묘)

3. 식재지도

- 조기식재하여 활착율 제고토록 조림지도(지도담당공무원 편성)
- 조림사업 지도인부 사역, 읍면별로 1-2명 배치

4. 실행사항 확인

- 읍면별 담당공무원이 필지별 식재사항 확인후 복명(경제수)

5. 확인복명에 따라 보조금 지급(산주별 개인구좌)

6. 활착율조사는 7월 30일까지 필지별조사 복명

○ 3년간 조림사업 실행실적

년도별	필지수 (필)	면적 (ha)	보조급지급액 (천원)	실행산주 (인)
계	1,318	3,753ha	5,668,557	1,180
97	524	1490	2213431	469
98	430	1203	2025005	385
99	364	1060	1430121	326

붙임 : '97. '98. '99 조림사업 실행현황 1부.

육 림 사 업

○ 관련근거
- 조림.육림 및 입목벌채요령(산림청예규 제 467호)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목 표
- 육림작업의 적기실행으로 임목의 생장촉진과 형질향상

○ 방 침
- 인공조림지 사후관리를 위주로 '99. 5월말까지 대상지 결정하고 산주 통보 후 직접실행의사 확인하여 실행주체 결정
- 산주직접실행 신청량은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추진
- 산주가 위탁 또는 무응답,반송되는 임지는 임협위탁추진

○ 추진개요

1.사업대상지 선정
- o 풀베기
  - 경제수는 식재당년을 포함 3년간 실행
    단 잣나무등 초기 성장이 늦은 수종은 5년간 실행가능
- o 어린나무가꾸기
  - 장기수 인공조림지로서 형질불량한 조림목이외의 조림목 생육을 방해하는 임지.
  - 조림지내 발생한 형질 우량한 천연림은 제거하지 않고 계속 보육함.
- o 천연림보육
  - 용재림으로 보육가치가 있는 밀생된 천연림분을 대상으로 함.
- o 간벌
  - 임목 상호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밀생임분으로서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분.

o 덩굴제거

- 조림등의 임목생장에 지장을 주는 칡덩굴류 제거를 요하는 임지
- 조림지와 주요도로변을 우선 중점실행

2. 사업지도

- 사업기간내 실행완료토록 현지지도(지도담당공무원편성)

3. 실행사항 확인

- 읍면별 담당공무원이 필지별 실행상황 확인복명
- 임협계약분은 준공검사관지명 실행상황 확인

4. 사업비 집행

- 확인복명에 따라 보조금지급(산주별 개인구좌)
- 임협계약분은 검사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지급

5. 3년간 육림사업 실적

년도별	필지수	면 적	금 액	실행산주수
계	5,286	16,079	4,486,332,000	4,797
1999	1,601	4,990	1,326,696,000	1,446
1998	1,995	5,720	1,632,970,000	1,788
1997	1,690	5,369	1,526,666,000	1,563

붙 임 : '97 ~ '99육림사업 실행현황 1부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

○ 관련근거 법령

- 산림법 제 10조의 4

○ 목 표

-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임도정책의 정착
  -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 도모
  - 기설임도의 보수관리 철저로 피해사전예방

○ 방 침

- 임도시설은 피해방지 및 산림경관을 유지하는 건실한 임도 구축
- 기설임도의 보수관리 철저로 활용도 제고

○ 추진개요

1. 예정지 선정 및 사업실행

- 예정지 선정 및 축량설계 조사실시 - 임협강원도지회
- 평창군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공사실행

2. 사업지도 및

- 사업지도 및 공사감독공무원지명 지도감독 철저

3. 실행상황 확인

- 준공검사원 지명으로 준공처리

○ 3년간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 실적

년 도	구 분	장 소	사업량(연장)	사 업 비
계		11개소	73.624km	537,329,000
1999	신설	평창읍 천동리	3.324km	130,380,000
1999	보수	봉평면 무이리 외 2개소	20km	64,156,000
1998	보수	봉평면 원길리 외 3개소	47.7km	204,916,000
1997	보수	진부면 상월오개리	2.6km	137,877,000

붙 임 : 임도시설 및 보수현황 1부

'98산림수해복구사업

○ 목　표

- 산림재배 산전예방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완벽하고 신속한 복구실시로 주민불편 해소

○ 방　침

- '98산사태 및 임도피해복구 이월사업량은 해빙과 동시에 동시에 착공 6월 말까지 완료
- 설계잔액, 계약잔액등의 불용액은 설계변경하여 완벽한 복구사업 실시

○ 추진개요

1. 피해상황 조사 및 확정
   - '98. 8우러 피해발생즉시 일제조사하여 피해상황 조사 확정
   - 피해지역 측량설계 조사 실시 (임협중앙회)
   - 장마철 이전인 6. 30일이전까지 조기완료하기 위하여 평창군 임업협동조합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각각 수의계약 도급실행
   - 당초 현지조사시 누락되었던 용평면 이목정리 외 3개소 0.15ha를 설계변경 포함실행
   - 설계 및 계약잔액으로 용평면 이목정리 상습수해 우려지역 추가 복구설계하여 사업 추진
2. 사업지도감독
   - 사업지도 및 공사감독 공무원 지명 지도감독 철저
3. 실행상황 확인
   - 준공검사원 지명으로 준공처리

○ '98 산림보호피해 복구사업 현황

공구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실행자
	위치	면적(연장)			
계	114개소	11.04ha 440m	562,735,000		
1공구	평창읍 상리 외 41개소	3.55ha	204,347,000	'99.1.13-8.30	임협중앙회
2공구	봉평면 덕거리 외59개소	7.4ha	294,328,000	'99.1.13-8.16	평창임업협동조합
3공구	용평면 장평리 외9개소	440m	27,290,000	'99.1. 13-9.6	평창임업협동조합
4공구	용평면 백옥포리외1개소	0.09ha	36,750,000	'99.10.21-12.19	평창임업협동조합

붙 임 : '98산림수해복구사업 현황 1부. 끝.

산 림 병 해 충 방 제 사 업

□ 근 거

○ 산림법 제103조

※ 법령요약 별첨

○ 산림병해충방제규정(산림청훈령 제654호)

□ 추진방침

- 조기발견,적기방제로 방제성과 제고
- 솔잎혹파리 중점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및 원상회복유도
- 약제방제와 임업적방제 병행실시로 방제효과 증대
- 예찰조사 강화로 돌발해충 초동박멸
- 지역실정에 부합한 자주적 방제의식 제고 및 능력배양
- 대국민 홍보 강화로 참여의식 고취

□ 추진사항('97 ~ '99)

(단위 : ha,천원)

구 분	사업량	필지수	산주수	소 요 예 산 액				비 고
				계	국 비	도 비	군 비	
합 계	18,605	8,320	5,483	4,358,765	2,314,959	618,153	1,425,653	
수간주사	8,300	4,387	2,550	1,893,717	1,136,725	237,078	519,914	임업협동조합
임내정리	3,489	1,672	1,213	1,068,960	537,067	162,552	369,341	"
항공시비	3,850	1,022	685	79,344	21,054	17,521	40,769	"
지상시비	980	571	464	449,498	283,457	40,998	125,043	"
위생간벌	550	189	168	261,794	96,863	49,740	115,191	"
피해목벌채	1,438	479	403	605,452	239,793	110,264	255,395	산주:1,330 임협:108

솔잎혹파리수간주사사업

(단위 : ha,천원)

년 도	사업량	필지수	산주수	소 요 예 산 액				사 업 실행자	착수일자	완료일자
				계	국 비	도 비	군 비			
합 계	8,300	4,387	2,550	1,893,717	1,136,725	237,078	519,914			
1997	3,000	1,555	682	164,620	79,017	26,339	59,264	평창임협	'97. 6. 5	'97. 7. 23
1998	2,000	931	763	783,327	509,162	78,332	195,833	"	'98. 5.19	'98. 8. 1
1999	3,300	1,901	1,105	945,770	548,546	132,407	264,817	"	'99. 6. 3	'99. 7. 24

솔잎혹파리수간주사(임내정리)사업

(단위 : ha,천원)

년 도	사업량	필지수	산주수	소 요 예 산 액				사 업 실행자	착수일자	완료일자
				계	국 비	도 비	군 비			
합 계	3,487	1,672	1,213	1,068,960	537,067	162,552	369,341			
1997	2,900	1,473	1,061	927,600	445,183	148,416	334,001	평창임협	'97. 9.12	'97.10.31
1998	587	199	152	141,360	91,884	14,136	35,340	"	'98.11.10	'98.12. 9

솔잎혹파리방제 항공엽면시비사업

(단위 : ha ,천원)

년 도	사업량	필지수	산주수	소요예산액				사업 실행자	착수일자	완료일자
				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3,850	1,022	685	79,344	21,054	17,521	40,769			
1997	1,350	423	293	27,400	6,302	6,302	14,796	평창임협	'97. 5 20	'97. 6.10
1998	1,500	329	223	31,129	8,716	6,848	15,565	"	'98. 5. 19	'98. 6.22
1999	1,000	270	169	20,815	6,036	4,371	10,408	"	'99. 5.29	'99. 6. 8

솔잎혹파리방제 지상시비사업

(단위 : ha,천원)

년 도	사업량	필지수	산주수	소 요 예 산 액				사 업 실행자	착수일자	완료일자
				계	국 비	도 비	군 비			
합 계	980	571	464	449,498	283,457	40,998	125,043			
1997	300	188	159	136,198	73,546	19,067	43,585	평창임협	'97.11. 1	'97.12.11
1999	680	383	305	313,300	209,911	21,931	81,458	"	'99.10.27	실행중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사업

(단위 : ha,천원)

년 도	사업량	필지수	산주수	소 요 예 산 액				사 업 실행자	착수일자	완료일자
				계	국 비	도 비	군 비			
합 계	550	189	168	261,794	96,863	49,740	115,191			
1997	550	189	168	261,794	96,863	49,740	115,191	평창임협	'97.10.30	'97.12.10

솔잎혹파리방제 피해목벌채사업

(단위 : ha ,천원)

년 도	사업량	필지수	산주수	소 요 예 산 액				사 업 실행자	착수일자	완료일자
				계	국 비	도 비	군 비			
합 계	1,438	479	403	605,452	239,793	110,264	255,395			
1997	1,258	393	330	517,797	191,584	98,381	227,832	산주벌채	'97. 2 28	'98.12 .31
1998	100	45	37	48,870	26,878	6,841	15,151	평창임협	'98.11.19	'98.12.18
1999	80	41	36	38,785	21,331	5,042	12,412	산주벌채	'99. 5.11	사업중

□ 중점추진 사항

ㅇ 솔잎혹파리방제

- 방제물량 최대한 책정으로 방제효과 제고
- 확산우려지역 및 우량소나무림 집중방제로 성과있는방제
- 방제성과 제고를 위해 지역완결주의 방제
- 송이,우량소나무림등 경관보존지역 우선방제
- 불량림은 제외,우량림의 신규확산지역 중점방제
- 피해지역의 밀생림 선 임내정리(1~5월)후 수간주사

ㅇ 항공엽면시비

- 송림보호구역등 특정지역의 항공시비 중점실시
- 농작물,양봉농가등 민원발생 예상지역 지양 및 사전통보
- 비료는 요소를2% 농도로 마그네슘과 희석살포
-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시행 전 산업재해보험 가입조치
  . 지자체 및 임업협동조합 단위로 산재보험 선가입후 방제

ㅇ 방제지도 철저

- 방제지는 지도원을 배치 현장지도 철저

□ 병해충별 방제요령

ㅇ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

- 대상지선정
  · 고속도로변,관광.사적지,국.철도변 등 특정지역
  · 송이생산지,천연보호림 등 주요지역
  · 기타 지역의 우량소나무림

- 솔잎혹파리방제지 구획 및 우화조사
  - 방제예정지를 1/25,000 지형도에 표시하고 표고별로 150m, 300m,450m,600m,600m 이상으로 구분
- 토중밀도조사
  - 조사시기: 5월1일 ~ 5월 15일
  - 조사요령
  - 피해도"중" 이상지역으로 남향 지역을 선택
  - 우화상설치 50cm이내에서 380㎠채취(우화상동일면적)
  - 채취된 흙을 체에담아 물에 흔들어 유충을채집 기록유지

○ 우화상황조사
- 우화상설치: 5월1일 ~ 15일
- 조사기간 : 설치후 매일조사(우화예정량의 50%까지)
- 조사결과 : 우화유충을 채집하여 기록유지하고 우화 가능량 45%일을 방제 초일로하여 추진

《 단계별 추진사항 》
- 우화개시 : 사업계약체결 및 방제지역별 약제수송 완료
  - 우화10% ~ 작업단정비,방제장비,방제복등 부품점검 작업단소집 안전교육 및 방제요령 교육
  - 우화45% ~ 방제작업착수

▣ 세부추진 사항

◉ 수간주사

ㅇ 경관보존 및 송이생산지등 뚜렷한 목적이 없는 불량림에 대하여는 방제 지양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림에 대한 방제실시

ㅇ 피해도"경"지역으로 4km이내의 극심지역에 적기에 방제실시하되 솔잎혹파리 우화 최성기를 감안하여 저지대부터 작업

ㅇ 천공 및 약제주입

- 동력천공기 30ha당 1대,약제주입기 10ha당1대 확보
- 경급별 기준에의거 천공당 4cc 주입이행
- 누락목 여부확인 후 재실행 조치

ㅇ 안전사고예방철저

- 작업단의 소집교육 및 작업개시 전.후 안전교육실시
- 해독재 및 구급약품 현장에 비치
- 통신망 구축으로 동발사태긴급대치 - 무전기 최대활용
- 약제주입 인부의 방제복착용조치 - 1인1착

ㅇ 현장지도원 배치

- 사업 특성상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으로 현장지도원을 직접고용배치
- 현장 지도원의 교육 및 감독철저로 완벽한 방제추진

○ 실행설계

- 방제대상지 표준지조사
- 대면적 방제지역의 경우 동일 임상은 과년도 참고자료 및 표준지 조사면적을 신축성있게 다음%이상 운영추진

(단위 :ha)

방제 면적	500 이하	501~1000	1001~1500	1501이상
표 준 지	2%	1%	0.7%	0.5%

- 임황을 조사하여 약제소요량 및 작업 난이도별 면적확정 소요약제 신청

※ 지역별 임지별 약제소요량 판단 정량투입으로 성과제고

◉ 임내정리

· 수간주사 전 임내정리 완료 및 불요 지역은 제외추진

· 피압목.개재목등 형질불량목을 먼저 임내정리 실시후 형질우량목만을 적기에 수간주사 실시함으로서 예산 및 인력절감하고 솔잎혹파리 서식여건을 불리하게 함은 물론,간접적으로 위생간벌효과

※ 6cm이하치수,불량목,형질열등목,우량목의 장애목등.

◉ 항공엽면시비

○ 목적 : 솔잎혹파리 피해임지에 항공기를이용,질소비료와 마그네슘을 살포하여 피해회복 촉진과 확산을 저지

○ 대상지

- 솔잎혹파리 집단 피해중 고속도로변,철도변,관광사적지 우량소나무림을 우선 선정하되, 송이생산지는 산주 및 채취 연고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한하고 민원소지 지양

- 사용재료 : 요소(질소질46%),산화마그네슘
- 시비시기 : 신초 생장촉진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5~6월중
- 농　　도 : 요소2% + 산화마그네슘 0.1%
- 살포요령
  · 헬기1대1일100ha 기준(25회),ha당 100ℓ살포
- 방제실행
  · 시간은05:00~11:00이내실시(1일작업회수:25회준수)
  · 예정지 답사는 병해충 담당자가 실행도면을 휴대하고 탑승하여 방제지역,위험지역 등을 조종사에게 정확하게 설명
  · 방제 지역에 무전기를 휴대 관계공무원을 배치하여 헬기 조종사와 수시연락하여 확인
- 헬기의 안전관관리
  · 헬기 착륙시에는 안전관리 요원 배치하여 인화물질등 훼손사례가 없도록 조치
  · 방제 후에는 안전한 장소 보관

◉ 피해목벌채

ㅇ 소생가망이 없는 피해도 "중"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벌채 제거후 내충성 경제수종으로 갱신하여야 할 대면적 집단피해지를 우선 선정

ㅇ 피해극심으로 소생가망이 없는 고사목은 1~3월중에 실시

ㅇ 피해도 "중"이상 임지는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급적 6~11월 실시

ㅇ 피해목벌채 대상지는 2월이전 완료

· 지역별 조사책임자 지명 및 조사반 편성

· 피해도.임황.잡종등 영림계획변경에 필요한 사항일체

ㅇ 피해목벌채 대상지선정 우선순위

· 완전고사되여 갱신조림이 시급한 임지

· 주요도로변 또는 경관저해임지 - 티,간벌기능

· 피해도 "심"이상 지역에 고사율 10%이상으로 소생가망이 없는 임지와 방제보존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임지

ㅇ 사업계획수립완료 및 추진

· 벌채대상지 우선순위에 의거 계획량 확정

· 확정지 적정여부 팀장(계장급)이상 현지 확인으로 피해목 벌채를 빙자한 경미한 임지 벌채근절

· 영림계획 직권변경조치 및 입지여건, 작업 난이도에 따라 작업공정을 적의조정 설계

· 산림 소유자에게 자진 참여토록 유도 및 통보

· 산주실행지에 대한 보조금교부결정통지 및 신고필증교부

· 산주 미실행지는 산림법 제14조의한 대집행

□ 기대효과

ㅇ 철저한 방제로 향토수종인 소나무를 보호하여 임산자원증대 및 경관조성

ㅇ 자연환경 보존 및 산림생태계 균형유지

ㅇ 년간 14,000여명의 지역인부를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 문제점

ㅇ 사업량과다 및 수간주사 작업시기가 농번기 및 하절기 장마 시기와 중첩되어 적기에 사업추진 지난함.

ㅇ 맹독성 포스팜약제 50% 사용으로 약물중독발생('96년1명 사망 8명 중독)-산재보험처리

- ㅇ 동력톱 사용 및 급경사 산림내작업으로 안전사고발생우려
- ㅇ 외지거주 산주의 산림사업 통지에 무반응 및 소극적 협조

□ 향후대책

- ㅇ 사업대상지 신중히검토확정
- ㅇ 안전사고방지 교육실시
- ㅇ 사업착수전 홍보철저실시

솔잎혹파리피해목벌채사업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평창군청의 케츠프레이즈인 "솔내음평창" 은 소나무의 푸르름이 평창군의 상징적이고 자랑스러운 자연환경을 들어내는바 도처에서 솔잎혹파리피해목벌채를 빙자하여 무차별 벌채하여 소나무임지가 감소되므로 솔내음 평창의 상징적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여론이 회자됨.

현 황 : 평창군의 솔잎혹파리피해목 벌채는 '1991년에 최초로 76ha를 벌채하여 '99년도까지 7,429ha의 소나무가 벌채되어 현재 침엽수 면적 29,530ha로서 그 중 소나무 생립면적이 19,530ha 소나무임지 전체가 솔잎혹파리 피해를 입어 그 중 피해정도가 경한 면적이 5,190ha(27%)피해정도가 중인 면적이 6,538ha(34%) 그 외 심한 면적이 7,378ha(39%)로서 현존 소나무 생립임지중 '1990년이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800ha, 항공시비 13,600ha, 지면약제살포 790ha, 지상시비 980ha, 위생간벌 550ha, 등 총44,631ha 라는 대면적의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국도변, 고속도로변등 소나무가 고사되지않고 생립되었음.

대 책 : 솔잎혹파리 피해도 조사 요령은 신초(당년도 생긴새잎)의 충영형성율에 의하여 구분하는바 충영율 50% 이상이 심하고, 20~49%가 중이며,19% 이하가 경이며, 충영율 조사요령은 조사대상지 내에서 피해정도가 평균이되는 조사목 5본을 전구역에서 선정하여 조사목 1본당 충영형성 상태가 평균이된다고 판단되는 1년생신초 1가지씩 채취하여 채취된 가지(5개)위에 붙어있는 총 잎수와 충영이 형성된 잎수를 계산하여 백분율에 의거 표시하며, 피해엽수가 20~49%이면 피해도 "심"으로 피해목 벌채대상으로 선정 기준이 됩니다.

'99년도 산림보호 시책에의하면 피해목벌채 대상지는 소생 가망이 없는 피해도 "중"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벌채후 내충성 경제수종으로 갱신하여야 할 대면적 집단 피해지를 우선하고 피해목 벌채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는 완전고사되어 갱신조림이 시급한 임지,그리고 주요도로변 또는 경관저해임지와 피해도 심이상 지역에 고사율 10%이상으로 소생가망이 없는 임지와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임지라 한바, 솔잎혹파리피해목벌채 대상지는 완전히고사 되어야만 벌채하는 것이 아니고 10%로만 고사되어도 피해도가 50%이상이면 벌채대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피해도 50%이상이고 고사율 10% 이상일 경우 아직 전체 임지가 완전히 고사한 상태가 아니고, 90%의 고사되지 않은 소나무 피해잎은 충영이형성되면 죽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지않은 정상잎길이에 비하여 충영이 형성된 피해잎의 길이가 2/3정도된 채로 살아있으므로 10%만 죽은 임지의 전체적인 관측색은 먼거리에서 볼 때 푸른색을 띠게되므로 자연환경보존과 나무를아끼는 일반인으로서는 아까운 푸른 소나무가 무자비하게 잘려나가는 안타가운 심정이라 생각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충영이 형성된 잎은 겨울이 지나며 서서히 주홍색 낙엽이되고 일부는 지상에 떨어지고 일부는 묵은가지에 달려있으며 당년도자란 신초에는 솔잎혹파리피해를 입은잎에 충영만 형성되지 죽어서 주홍색 낙엽을달고있지 않으며, 솔잎혹파리 애벌레가 소나무잎충영속에서 영양분을 집중 가해하므로 소나무가 완전히 고사될 경우만 신초가 말라죽습니다.

신초 가지의잎은 죽기전까지는 푸른색을 띠며 나무의 가지끝이 당년도에 형성되므로 나무가 고사되기 전에는 대체로 푸른색을 띠는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피해도가 높아도 나무가 근본적으로 죽기 전에는 신초의 잎은 푸르게 달려있으며 당년도 신초가 내년에는 묵은 가지가되었을 경우만 그 가지에는 낙엽 색깔의 소나무잎이 이듬해까지 일부달려 있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주색으로 눈에 띠나 가지끝 신초가 자라면 대부분 신초의 푸른색에 가려져 푸른 소나무를 벌채하는 것으로 보게되는 경향 입니다. 소나무 잎이 50%이상 충영이 형성되면 소나무는 한잎에 6마리씩 수많은 솔잎혹파리 애벌레로부터 영양분 손실을 입게되며, 이런 상태의 소나무를 수간주사등 방제활동이 없을 경우 급격히 고사되는 것입니다.

이 예는 지난 봉평면의 바다같은 대면적고사 상태를 보아 알것 입니다. 솔잎혹파리피해정도가 50% 이상이면 이미 상당량의 영양이 손실되며, 이런 나무를 베면 송진이 정상소나무에 비하여 빈약하여 70% 이상 심한 경우에는 송진탈출량이 극히 적어지며, 이 나무가 고사되면 곧바로 부패되어 산주로서는 완전고사되기전에 벌채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며, 법규정에서는 죽기전에 벌채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솔잎혹파리가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우화하는 시기가 너무도 다양합니다. 대면적 수간주사 사업은 여름철에 시한부로 정해져있으나, 우화시기는 수간주사 기간이 완료된

초가을에도 우화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수간주사를 주입하면 하루 1.4m씩 수관을 타고올라 일반적으로 나뭇잎까지 도달 기간은 일주일정도 걸리며, 포스팜액제의 소나무에 약효과가 있는 잔유기간은 약2개월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우화 혹파리는 폐사되지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솔잎혹파리가 1년에 110개의 산란으로 볼 때 수간주사 구역에도 극심한 피해 확산이 종종있습니다. 피해목벌채 대상이 수간주사등 방제활동이 없는 오지역이 대부분이나 도로변의 벌채는 위와 같은 경우입니다. 물론 피해도가 적은 경우에도 벌채되는 경우가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산림경영은 산림내에서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 가꾸고 벌채하는 작업을 담당하며, 산림은 거의 대부분 교통상의 어려운 형편으로서 평지 개념의 작업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부 푸른색을 띠고 있어도 익년도에는 급격한 쇠태로 고사가 예상되는 임목을 부폐되기 전에 베어서 상당한 수익을 보았다고 지탄을 받아서는 타당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솔잎혹파리피해를 입은 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이해가 갈것입니다. 피해목이 벌채하지 아니하여도 자연상태로 소생한다면 대부분의 산주 자신도 피해목 벌채를 기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은 초기 대면적 피해가 봉평면 일대입니다. 고사된것만 벌채하겠다고 고집하다가 완전히 산중에서 썩었습니다.

썩은 나무를 누가가져갑니까, 아직도 하양게 껍질이 벗겨진채 비바람에 쓰러져 썩어가는 임지가 눈에 띕니다.죽기전에 벌채하여야한다고 산림청에 많은 산주가 수없이 진언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죽은나무냐 산나무냐가 중요한것이아니고 죽을것이냐 살릴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년간 한정된 방제계획량으로는 어차피 포기하여야하는 구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수많은 필지와 대면적의 벌채대상목 선정에 부적한 임지도 포함되었으리라 사료되오나 현지조사 공무원의 각자 다소 다른 견해의 판단에 기인된 것으로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오며, 향후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업무는 그 벌채 대상선정과 벌채작업 및 후속 수종갱신등 제반 업무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일부 산주가 아닌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98군유림 솔잎혹파리 방제

피 해 목 벌 채 현 황

□ 근 거

○ '97산림병해충방제시책(강원도)
○ '98 "

○ 산림병해충방제요령(산림청 훈령)
※근거법규 발취서 별첨

□ 추진경위

○ '97.1월 위 근거규정에 의거
- '97. 2. 28 공. 사유림에 대해 피해지를 일제조사 482필지, 1,440ha를 확정 (군유림 46필지, 292.87ha)

- '97. 5. 21 군유림 솔잎혹파리피해조사를 재실시 하여
- '97. 7. 11 피해도"심"으로 판명된 57필지, 367.3ha, 14,250㎥의 입목매각계획을 확정

- '97. 8, 12 ~ 9. 8까지 24필지, 138.15ha를 매목조사하고 최종계획을 재조정 16필지, 133.85ha로 확정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방법에 이견이 있어 년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98년도로 이월 추진 하게 되었음.

○ '98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 '98. 4. 27 군유림 솔잎혹파리피해 벌채 대상지조사를 재실시 30필지, 262.2ha를 조사 그중 204.7ha로 재조정

- '98. 7월 군유림솔잎혹파리 피해 임지 입목매각계획을 수립
- '98. 7월 ~ 8. 30까지 19필지, 164.85ha를 우선 매목조사 하여 매각 예정가격을 평정

- '98. 10. 8 피해목 벌채방법을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결정

- '98. 10. 13 입찰공고하여, 10. 24 입찰을 집행 매각하였고 매각금액은 예정가격 134,000천원에 530,160천원이 낙찰 되었음

- '98. 10. 27 필지별로 영림계획 시업 신고를 수리
- '98. 11. 16 부터 벌채지도반을 편성 운영(필지별 분담)

- '98. 12. 9 매각필지중 . 기번 1. 2번 계약자가 매각대금 62,226천원을 미납부하여 12. 9계약을 해재하고 계약보증금 6,226천원은 군금고에 귀속 시켰음

- '98. 12. 15 미매각한 3필지, 31ha, 1,825㎡을 재입찰공고 하여 12.22일 23,700천원에 매각하였음

-'99. 1. 4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2명에 대해 각각 6개월간 부정당업자로 행정처분하였음

상 호	주 소	대 표 자	행정처분기간	처분내용
경림산업사	원주시 단계동 490 - 2	김 남 교	'99.1.12~7.11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서임업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110	박 정 순	"	"

- 피해목벌채는 '99. 1월부터 7. 23까지 현지점검을 끝으로 모두 완료 하였음

□ 솔잎혹파리 피해목 매각현황

ㅇ 매각규모 : 19필지, 164. 85ha, 10,873㎥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2인이상 유효입찰 성립)
ㅇ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을 초과한 최고 입찰자
ㅇ 입찰결과
- 입찰일시
. 1 차 : '98. 10. 24(토) 10:00, 군청대회의실
. 2 차 : '98. 12. 22(화) 13:00, 군청소회의실

- 낙찰결과
. 1차당초 : 예정가격 134,000천원⇒낙찰금액 530,000천원
변경 : " ⇒확정금액 491,600천원
※ 3필지 62,260천원 대금미납부로 계약해재

2 차 : 예정가격 17,900천원 ⇒ 낙찰금액 23,700천원
※ 당초대비 38,400천원 저가 낙찰

- 수익분석
. 총수입액 : 595,880천원(입목대 491,600, 벌도비 67,948
정리비 36,332)

□ 주민여론판단

ㅇ피해도가 낮은 푸른 소나무를 벌채하였다(미탄지역)

⇒ 피해도가 "심" 으로 조사되었다 하여 잎자체가 완전히 고사된것은 아니며 솔잎의 50%이상이 솔잎에 혹이생긴 상태며,

충형성 시기가 4월부터 6월경으로 조사시기가 같아 잎은 다소 푸르게 보일 수 있으나 이미 소생가망이 없는 상태임.

o 재적량에 비해 과소한 금액으로 매각하였다

⇒솔잎혹파리 피해목은 일부 고사된 입목으로 용재가치가 없으며 대부분의 생산재가 펄프용재 및 톱밥용재로이므로 입목가격이 정상용재에 비해 낮으며, 또한 소경목은 대경목에 비하여 매각금액이 낮아지게됨.

□ 향후추진방향

o '99년도는 당초'98년도 3차조정시 확정한 262.2ha중 벌채한 잔여량 97.35ha를 정밀조사하여 매각이 시급한 필지만 실시할 계획이며 추후에는 피해목벌채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가급적이면 벌채를 지양하고,

o 예정가격 사정은 종전까지 국유임산물매각규칙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평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문업체에 용역 결정할 계획임.

'97 ~ '99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

○ 현 황

'97년부터'99년9월말까지 타용도 산지전용 상황을 살펴보면 총282건에 331.7ha이며, 목적별로는 농지조성28건.33.4ha, 초지조성51건.167.94ha, 택지82건.30.48ha, 공장용지2건.0.21ha, 광업용지6건.12.11ha, 도로26건.30.47ha, 기타87건.57.09ha입니다.

위 내용으로 볼 때 농업분야 및 택지조성에 중점적으로 관련하여 타용도 산지전용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한 농지 및 초지는 관내에 거주하는 실질적인 농민이 많았으며, 택지는 타시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전원생활과 생업을 위한 목적으로 전원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여관 및상가등)로 허가를 주로 받았습니다.

산림법상 보전임지는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이용원칙으로 하며, 준보전임지는 농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림법상 보전임지는 규제사항이 많아 타용도 전용이 가능한 준보전임지에 많이 신청되어 허가받았습니다.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업무처리는 신고인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후 제한사항 유무등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복구비용과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을 부담토록 한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 만료된때에 복구명령 및 승인하여 복구완료후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IMF경제여파등으로 일부 산림형질변경지가 공사 중단된채 방치되어 토사유출우려 및 경관저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복구 또는 행정지도토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허가구역외 지역을 무단으로 훼손한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입건 조치하여 관련자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지를 원상 복구토록하여 자연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용도 산지전용 현황

단위 : ha

년도별	합계		농지		초지		택지		공장용지		광업용지		도로		기타		비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282	331.7	28	33.4	51	167.94	82	30.48	2	0.21	6	12.11	26	30.47	87	57.09	
'97	97	121.38	4	6.93	13	51.42	24	9.37	-	-	1	0.98	9	10.71	46	41.97	
'98	112	143.42	15	17.88	34	84.47	24	9.46	-	-	2	1.44	11	18.19	26	11.98	
'99.9월 말	73	66.90	9	8.59	4	32.05	34	11.65	2	0.21	3	9.69	6	1.57	15	3.14	

○ 주민여론 및 문제점과 대책

○ 문제점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의 훼손 작업중 방치로 토사유출 및 경관위해 우려가 있음.

○ 현 황

'97년부터'99년9월말까지 타용도 산지전용 상황을 살펴보면 총282건, 331.7ha로서 용도별로는 농지, 초지조성, 택지, 공장용지, 광업용지, 도로 및 기타등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후 부지조성 작업중에 IMF의 경제난 여파로 일부 훼손지가 방치된 상태로 토사유출 및 경관위해 우려가 야기되고 있음.

○ 대 책

우리군의 임야 면적율은 82%(120,445ha)이고 전국평균 임야율은 65%(6,436,304ha)로서 전국의 토지이용율35%에 비하면 평창군은 18%이므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의 관건이 되는 토지 이용율이 타지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산지이용구분상 산지의 타용도 전용이 용이한 우리군의 준보전임지 면적율이 55%(65,731ha)로서 산지이용의 용이성은 타지역에 비하여는 우수한 편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준보전임지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현금의 지역개발을 위한 추세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각종사업체의 지역유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강원도를 찾는 사업체가 타도로 이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영월군의 경우 5만명 인구유지가 무너져 교부세 혜택 및 지역경제 등 위기에 처한경우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최소한 5만명 인구를 넘기 위하여 평창군 주민은 물론 행정 전부서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부응하여 임업분야에서도 산림을 이용하는 사업체의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봉평면 무이리의 보광휘닉스와 홍정리 허브나라의 경우 개발당시 주민들의 거부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98년도 보광휘닉스를 찾아온 손님이 49만명이며, 허브나라의 경우 '98년도 3만명의 외래인을 우리지역에서 쉬어가도록 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인근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켜 숙박시설등 각종개발 붐이 일어나 주변에 형질변경허가신청이 빈번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형질변경 요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지개발 초기의 훼손지 황폐화는 부득이한 상황으로서 신속히 개발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기시 토사유출 및 경관저해 요인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림훼손으로 부지는 조성해놓고 IMF사태의 어려움으로 건축은 하지 못하고 나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경우 이미 조성된 부지의 산림복구 문제는 지역개발 유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다각적인 견해가 유발되는 문제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인접 강원도의 사업희망자들을 경기도로 유치하기 위하여 인접 시,군민원실을 순회하며 선택된 사업자를 자치단체장이 직접 면담하여 사업장 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하여 관내 사업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앞서가는 행정의 예라고 하겠으며, 우리군에서도 지역에 제발로 찾아온 사업자에 대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지역에 한사업체라도 더 발을 붙일수 있는지 등 배려가 요구되는 면도 있습니다.
부지만 조성되면 누군가 개발하기 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 주인이 건축 등 사용목적을 이행하므로 시간이 걸리긴 해도 시간이 해결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훼손된 토지가 오래도록 방치된 것은 임업행정업무 수행의 소홀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훼손방치되어 토사유출우려가 있는 지역은 신중히 재검토하여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발이 중지되어 경관위해 지역은 조속 개발을 촉구토록 유도하고, 장기 방치지에 대하여는 개발의사와 가능성을 타진하여 부진한 구역은 산림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여력이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하겠읍니다.

그간 산림형질변경 업무의 소홀했던점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국내경제의 어려웠던 IMF여파를 감안하시어 넓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향후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산림형질변경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처리방향

앞으로는 무분별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지양하고 산림형질변경 신청시 사업성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훼손상태의 장기 방치로 토사유출 및 경관위해가 없도록 산림형질변경허가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관내의 사업지연 지역에 대하여는 재점검하여 조속한 사업재개와 훼손 적지를 복구완료토록 하고 복구지시에 불응하는 지역은 훼손복구 명령을 발부하여 이를 어기는 자는 대집행조치등 개발 및 환경보전업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최소한 5만명 인구를 넘기 위하여 평창군 주민은 물론 행정 전부서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부응하여 임업분야에서도 산림을 이용하는 사업체의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봉평면 무이리의 보광휘닉스와 홍정리 허브나라의 경우 개발당시 주민들의 거부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98년도 보광휘닉스를 찾아온 손님이 49만명이며, 허브나라의 경우 '98년도 3만명의 외래인을 우리지역에서 쉬어가도록 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인근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켜 숙박시설등 각종개발 붐이 일어나 주변에 형질변경허가신청이 빈번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형질변경 요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지개발 초기의 훼손지 황폐화는 부득이한 상황으로서 신속히 개발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기시 토사유출 및 경관저해 요인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림훼손으로 부지는 조성해놓고 IMF사태의 어려움으로 건축은 하지 못하고 나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경우 이미 조성된 부지의 산림복구 문제는 지역개발 유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다각적인 견해가 유발되는 문제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인접 강원도의 사업희망자들을 경기도로 유치하기 위하여 인접 시,군민원실을 순회하며 선택된 사업자를 자치단체장이 직접 면담하여 사업장 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하여 관내 사업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앞서가는 행정의 예라고 하겠으며, 우리군에서도 지역에 제발로 찾아온 사업자에 대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지역에 한사업체라도 더 발을 붙일수 있는지 등 배려가 요구되는 면도 있습니다.
부지만 조성되면 누군가 개발하기 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 주인이 건축 등 사용목적을 이행하므로 시간이 걸리긴 해도 시간이 해결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훼손된 토지가 오래도록 방치된 것은 임업행정업무 수행의 소홀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훼손방치되어 토사유출우려가 있는 지역은 신중히 재검토하여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발이 중지되어 경관위해 지역은 조속 개발을 촉구토록 유도하고, 장기 방치지에 대하여는 개발의사와 가능성을 타진하여 부진한 구역은 산림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여력이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하겠읍니다.

그간 산림형질변경 업무의 소홀했던점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국내경제의 어려웠던 IMF여파를 감안하시어 넓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향후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산림형질변경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처리방향

앞으로는 무분별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지양하고 산림형질변경 신청시 사업성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훼손상태의 장기 방치로 토사유출 및 경관위해가 없도록 산림형질변경허가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관내의 사업지연 지역에 대하여는 재점검하여 조속한 사업재개와 훼손 적지를 복구완료토록 하고 복구지시에 불응하는 지역은 훼손복구 명령을 발부하여 이를 어기는 자는 대집행조치등 개발 및 환경보전업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